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조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08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4.

발 의 자 : 조정훈 · 서천호 · 김태호
최수진 · 윤용근 · 김용태
김재섭 · 이소희 · 박준태
박충권 · 김대식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혐의가 있으면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2025년 기준 전체 처리사건(1,977건) 중 56.5%(1,117건)을 직권으로 인지하여 조사하였음.

그런데 영국, 호주 등의 해외 국가와 달리 직권조사의 대상 선정 및 집행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조사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직권조사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그 선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대상 선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80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 조사 대상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0조(위반행위의 인지·신고 등)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	제80조(위반행위의 인지·신고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이 경우 <u>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 조사 대상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</u>
② ~ ⑦ (생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